

##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김 인 규<sup>†</sup>

전주대학교

국내 상담관련 교육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자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상담분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상담분야 국가자격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에 대해 살펴보고, 상담분야의 다양한 민간자격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자격의 문제점으로는 독점적 자격의 부재, 실무능력 훈련과 검정의 부족, 체계적 관리체제 부재가 제기되었고, 민간자격의 문제점으로 상담서비스의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자격의 기준 부재, 자격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격관리체제 부재, 다양한 자격으로 인한 상담수련의 혼란과 비용 부담 등이 제기되었다. 상담자격의 발전방안으로 상담자격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상담법 제정, 상담자격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한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시행, 대학(원) 교육과정과 상담자격을 연계하는 상담교육인증제도 시행, 상담서비스의 행정적 관리를 위한 행정규정 시행, 국가적 상담관리를 위한 상담활동 관리감독 기구 설치 운영 등의 방안을 살펴보았고, 상담자격 발전을 위한 과제로 상담분야 단일 기구 설립, 상담정책 교육 및 상담정책 전문가 양성, 공적 영역으로서의 상담에 대한 담론 형성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상담자격, 상담법, NCS, 상담교육인증

<sup>†</sup> 교신저자 : 김인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교수연구동 619호 / Tel : 063-220-2495, E-mail : ikkim@jj.ac.kr

1950년대 중반 미국 교육사절단의 소개로 생활지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상담활동은 60여년이 지난 현재 매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마다 상담전공이 개설되어 많은 상담전공자가 양성되고 있으며 상담관련 각종 학회와 기관들이 크게 늘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8년 5월 말까지 등록된 ‘심리상담’ 민간자격증은 2,413개로 전체 민간자격증 29,952개 중 8.1%에 달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신규등록건수가 2015년에는 567건, 2016년에는 547건, 2017년에는 430건으로 매년 수백 개의 신규 민간 자격이 등록되고 있으니 상담자격이 가히 폭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분야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는 2018년 현재 시행 15년차에 누적인원 17,187명(1급 510명, 2급 5,178명, 3급 11,499명), 직업상담사는 2018년 현재 시행 19년차에 누적인원 41,502명(1급 442명, 2급 41,06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도 상담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가정상담, 군상담, 중독상담 등 다양한 상담활동에 수많은 상담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담을 언급한 법률도 청소년상담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20여개에 달해 상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많은 상담분야 자격과 상담관련 사업이 과연 국민들에게, 그리고 상담계에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정한 기준 없이 남발되는 수많은 민간자격증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도 각 부처별 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따로 관리하거나 인정하다 보니 정부의 상담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자의 수준이 천차

만별이다(이동귀, 김광식, 권해수, 2013). 민간에서의 상담활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전무하다보니 상담자 또는 상담기관의 비윤리적, 위법적 사례가 발생하고, 상업적 수익모델에 따른 상담기관운영이 상담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김영근 등, 2012; 김정진, 2016).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전문적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과정과 그 자격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되지 못한 것이다(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김인규, 조남정, 2016; 김인규, 최현아, 2017). 상담이 전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국민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준 있는 상담자의 확보가 관건일 것이며 여기에는 상담자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상담 자격제도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담과 관련된 자격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이동귀, 김광식, 권해수, 2013).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담분야 자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상담의 전문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상담분야 국가자격의 현황 및 발전방안

현재 법령상에 명시되어 국가자격으로 볼 수 있는 상담분야 자격은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검정형 자격과 전문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성폭력상담원, 가정폭력상담원 등 과정이수형 자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검정형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연수 등의 일련의 검정과정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과정이수형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자격 중 취득자와 실무 종사자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자격으로서 검정형 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자격과 과정이수형 자격인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한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는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은 2003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구성된 3등급 체제이다. 각 급에 부여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로서 ‘지도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상담사로서 ‘기간인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는 유능한 청소년상담사로서 ‘실행인력’의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등 9가지 상담관련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일정한 상담 실무경력 없이도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청소년상담사 검정과목은 1급의 경우 필수 3과

목, 선택 2과목으로 총 5과목이고, 2급의 경우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으로 총 6과목이며, 3급의 경우 필수 5과목 선택 1과목을 포함하여 총 6과목이다. 급별 필기시험과 면접에 합격한 자는 급별 100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후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관련 최근 연구로는 서영석 등(2013),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2013),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2017) 등의 연구가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상담에 있어 실무경력이 매우 중요한데 응시자격 기준에는 실무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기존의 민간 상담관련 자격증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학위중심의 사고가 강하게 있다. 셋째, 1990년대 초에 설정한 학과중심의 응시자격은 2000년 이후에 생겨난 상담학과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자격검정 과목은 시대적·환경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자격검정 과목들이 청소년상담사의 고유역할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의 자격검정 과목은 변화한 상담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상담사의 핵심역량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안에 일치성이 부족하다(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이와 같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문제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행 3등급 체제에서 2등급 체제로 변경한다. 개정 청소년상담사 1급은 '지도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청소년상담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정 청소년상담사 2급은 '전문 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개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포함시키고 1급 청소년상담사에게 슈퍼바이저 기능을 부여한다. 현행 3등급 체제에서의 학부 졸업자가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개정 2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일정 수준의 상담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게 슈퍼바이저 기능을 부여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실무 역량강화 체제를 구축한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응시자격 기준을 기존의 학위중심에서 실무경력 중심으로 변경한다.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학위중심에서 실무경력 중심으로 변경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단지 학위취득만을 통해서 실무경력을 얼마나 쌓아 왔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상담은 실무경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학력철폐의 기초에 부합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상담능력을 단지 학위만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능력을 가지고 검증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학력보다는 능력이라는 기본 취지를 잘 살리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둘째, 응시자격 기준을 기존의 학과중심에서 이수과목 중심으로 변경한다. 현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상담관련학과 중심에서 이수과목 중심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상담관련학과라는 말 자체가 주는 애매함을 탈피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서 9개 학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인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학과는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이수과목 중심으로 변경될 경우 필수적인 상담관련 영역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지어 교과목을 제시함으로써 학과의 이름에 좌우되지 않고 응시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향후 상담관련 학과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무경력과 이수과목 중심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공식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상담관련 학과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과목 체제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받았을 때에는 이 학과의 프로그램을 상담관련 프로그램으로 인증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과의 이름만 가지고 상담관련 학과인지 평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격제도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공신력 있는 인증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넷째, 현행 상담관련분야 9개에 '상담학과'와 '심리치료학과'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1990년대에 제정되어 최근 빠른 속도로 신설되고 있는 상담 관련학과의 변화 및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한 상담학과를 졸업한 다수의 응시자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관련분야 학과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이수과목 확인 서류제출로 응시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학과와 심리치료학과를 상담관련 분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 개정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현행 응시 자격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

제와 민원의 대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명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2017)은 변화된 청소년 문제에 관한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급별 역할/직무/NCS/역량을 분석하여 청소년상담사 고유역할을 반영하며, 9개 학과와 새로 추가되는 상담학과와 심리치료학과 학부/대학원 이수과목을 분석하고, 응시자격·자격검정 과목·자격연수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자격검정 과목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은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상담 관련법과 행

표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개정안(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등급	현행		개정		비고
	구분	과목	구분	과목	
1급	필수 (3과목)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수 (4과목)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청소년위기상담 (중독, 성, 비행 등)	유지 유지 유지 통합
	선택 (2과목)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필수 (4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수 (4과목)	청소년상담방법 (개인, 집단, 가족) 심리 · 교육 평가 활용 이상심리	통합 수정 유지
	선택 (2과목)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청소년교육상담 (학업, 진로 등)	통합
3급	필수 (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수 (4과목)	상담이론 심리 · 교육 검사 실시 발달심리 청소년이해와 지원	유지 수정 유지 통합
	선택 (1과목)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등 현행 필수 3 과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 4과목을 청소년위기상담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청소년 정책수립,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청소년상담연구, 청소년문제 전문적 개입 등 1급 청소년상담사(지도인력)의 고유 업무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과목을 유지한 것이며, 또한 선택과목 통합 및 청소년문제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 전문가 연구결과 및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은 현행 필수 과목 중 ‘이상심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을 ‘심리·교육평가 활용’으로 명칭을 수정하며,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가족상담’을 ‘청소년상담방법(개인, 집단, 가족)’으로 통합하고, 선택과목에 있던 ‘진로상담’, ‘학업상담’을 ‘청소년교육상담(학업, 진로)’으로 통합하고,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를 삭제하였다. 이는 2급 청소년상담사(기간인력)의 직무분석, NCS 분석, 역량분석 등을 종합하여 청소년상담방법(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청소년교육상담(학업, 진로), 이상심리, 심리측정 등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과목으로 구성한 것이며, 유사과목 통합 및 중복과목 폐지를 제안한 전문가 연구결과 및 실무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은 현행 필수과목 중 ‘상담이론’, ‘발달심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심리측정 및 평가’를 ‘심리·교육검사 실시’로 명칭수정하고, 선택과목인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을 ‘청소년이해와 지원’으로 통합하여 수정하며, ‘집단상담의 기초’, ‘학습이론’은 삭제하였다. 이는 3급 청소년상담사(실행인력)의 양성학과인 청소년상담 관련학과에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상담, 발

달)을 반영한 것이며, 3급의 직무분석, NCS 분석, 역량분석 등에 제시된 3급의 주요 업무(심리검사 실시, 청소년통합지원)를 반영한 것이다.

####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

초·중등교육법 21조는 전문상담교사(1급, 2급)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 양성과정에서는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에서 상담이론과 실제 등 14개 기본이수과목 중 7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이를 포함한 전공 관련 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대학원 양성과정에서는 상담이론과 실제 등 7개 필수과목과 행동수정 등 21개 선택과목 중 2과목(1급) 또는 14과목(2급)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관련 최근 연구로는 정봉희(2010), 김인규, 조남정(2011), 김희정, 유형근, 정영주, 선혜연(2015)등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학부과정의 기본이수과목이 적절하지 않다. 현재의 14개 교과는 2009년에 지정된 17개 교과 중 진로관련 교과를 통합하여 정해진 것이다. 기존의 17개 교과는 2004년 고시된 7개 과목(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이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을 2009년에 ① ‘진로상담’ 과목을 ‘진로상담·직업교육론·직업정보·진로지도’로 내용을 확대하고 ② ‘심리학개론,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등 심리학 관련 과목을 6개 신설하며 ③ 상담실습 과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 과목구성은 2009년 이후 변화된 학교상담 환

경과 제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심리학 관련 과목과 진로관련 과목이 불필요하게 많으며, 학교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6년 기본이수과목 개정 시 진로관련 과목만 통합하고 나머지 과목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17개 과목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교육부 관련 부처와 전문상담교사 양성학과 대표와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상담실습과정이 충분하지 않다. 전문상담교사는 자격 취득 후 바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실무능력을 충분히 갖출 교육과정이 없다. 단순히 4주간의 교육실습을 다녀오고 5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하거나, 대학원의 경우 '2종 이상의 사례연구와 2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는 상담실무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양성기관 간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충실도, 교육여건, 교수요원 확보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 즉, 교수진이 부족하여 강의의 질이 저하되고 교육 현장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이론에만 치우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교육과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학마다 다른 수준과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부의 경우 일반교직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과정원의 10%만이 전문상담교사과정 학생이므로 전공수업에서 학교상담 중심의 강의를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일제가 아니라 야간제 또는 계절제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 충실도가 떨어진다.

넷째, 1급과 2급 양성 교육과정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교직경력이 없이 학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치면 전문상담교사 2급이 수여되며, 교직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교사가 교육대학원에서 보수교육과정을 거치면 1급 자격이 수여된다. 즉 더 높은 심화교육이나 상담전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직교사경력 여부에 의해 1급과 2급이 구분되어 전문상담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김인규, 2011; 김희정 등, 2015).

전문상담교사 자격의 발전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 표준교육과정이 제안되었다. 정봉희(2010)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델파이 조사 한 결과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정상담, 심리학개론은 1순위, 학습상담 2순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3순위, 사이버상담 4순위, 청년발달 5순위, 이상심리 6순위, 아동발달 7순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상담, 학교부적응상담, 인간관계론, 행동수정은 다소 낮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습부진아, 인지심리,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에 대해서는 제외과목으로 분류되어, 기초 심리학적 지식을 익히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학업·대인관계·발달 문제 등 실질적인 발달과 성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인규(2011)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과 계속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DACUM기법을 활용하여 현직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교육전문가(교수)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으로 전공필수 7과목

21학점(청소년문제와 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진로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가족상담, 성격이론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과 전공선택 11과목 22학점(실습 및 사례연구, 청소년 발달과 상담, 위기상담, 이상심리학, 대화기술, 학습상담, 상담윤리와 행정,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 미술치료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이 도출되었다.

김희정 등(2015)은 표 2와 같이 전문상담교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학교상담 기초와 상담실습을 필수이수영역으로 하여 학부, 대학원 모두 14학점(7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영역별 상담, 학교상담실무, 기초이론을 선택이수영역으로 하여 학부는 28학점(14과목) 이상,

대학원은 4학점(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 국가자격의 문제점

이와 같은 국가자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분야 국가자격이 그 분야 상담에 대한 독점적 자격이 아니다. 즉 국가자격이 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 아니어서 다른 자격으로도 그 자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해당 자격이 없어도 그 센터에서 일하기도 하며(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민간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자

표 2. 전문상담교사 양성 표준 교육과정 안(김희정 등, 2015)

구분	교육과정			
	이수영역	과목명	대학원	학부
필수	학교상담 기초	학교상담의 이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상담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상담실습	상담실습I, 상담실습II		
선택	영역별상담	학생문제 이해와 지도, 위기상담, 가족상담, 단기상담, 학습상담, 행동수정, 특수아상담, 다문화상담, 성상담, 예술상담, 매체상담	2과목이상 (4학점이상)	14과목 (28학점이상)
	학교상담실무	학부모 상담과 교육, 학교상담 프로그램개발, 학교자문·조정·연계, 학교상담 법과 행정·윤리, 학교상담 연구방법론		
	기초이론	심리학개론, 성격심리, 아동·청소년 발달심리, 이상심리, 인간관계론		



격 취득이 필수라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필수적이지만 학교의 위클래스나 교육지원청의 위센터에는 민간상담자격으로도 학교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자가 많다. 이는 해당 국가자격이 공공기관에서의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해당분야 자격을 위한 필수 자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자격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현재의 상담분야 국가자격은 상담실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모두 양성과정이나 검정과정에서 상담실무능력에 대한 요구와 검증이 민간자격보다도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상담사는 면접에서 상담사례개념화 능력이나 위기상담 대처능력 등을 검증하고, 100시간의 연수시간을 통해 청소년상담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지만 과연 이 두 과정을 통해 상담실무능력이 충분히 길러지거나 검증되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또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생실습 4주와 교육봉사 5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며, 임용고사 2차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상담실무능력을 검증하고자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역량 함양에 대한 검정의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김인규, 조남정, 2011; 김희정 등, 2015). 이에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전문성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셋째, 현재의 상담분야 국가자격에 대해 자격갱신이나 보수교육 등의 체계적 관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모두 보수교육이나 연수 등의 형태로 추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전문상담교사 역시 여러 연수가 진행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연수체계(최해림, 김영혜, 2006)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양 자격 모두 자격 취득 후 상담자 역량개발에 핵심적인 상담수퍼비전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상담자의 상담전문성 발달과 유지가 가능한 자격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상담분야 민간자격의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자격의 현황

현재 상담분야 민간자격의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나 연구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qi.or.kr>)를 통해 현황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2018년 5월 26일 현재 키워드 검색 시 전체 민간자격 29,952개 중 ‘상담’으로는 4,223개(전체의 14.1%), ‘심리상담’으로는 2,413개(전체의 8.1%)가 검색된다. 심리상담분야 자격의 연도별 신규등록건수는 60건(11년)-158건(12년)-261건(13년)-454건(14년)-567건(15년)-547건(16년)-430건(18년)으로 민간자격 등록 첫해인 2011년부터 급격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심리분야를 비롯한 민간자격 등록이 급증하는 것은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

표 3.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등급	자격증 명칭
A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B	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한상담수련전문가, 한상담전문가 1급, 사 티어가족상담전문가-지도감독,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가족상담전문가-수련감독전문가
C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한상담전문가 2급, 가족상담전 문가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D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가족상담전문가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상담사 3급
E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직업상담사 1급, 2급

출처: 이동귀 등(2013). p 108.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규민간자격을 심의해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한 서류행위로 민간자격을 신고하기만 하면 등록이 되고 운영이 가능한 현재의 민간 자격등록제도가 이와 같은 민간자격의 범람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우선 이동귀 등(2013)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자격기준 재정립’연구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선발 시 민간자격증에 대한 가점부여 기준마련을 위해 2013년 6월 당시 국내에서 발급되는 상담관련 자격증 600여종을 평가하였다. 평가영역은 개인상담(30점), 집단상담(20점), 심리평가(10점), 슈퍼비전(15점), 시험(15점), 기관(10점) 등 6개 영역이었다. 총합점수가 5점을 초과한 자격증은 29개였으며 20점 단위로 A에서 E까지 5등급을 부여하였는데 그 평가결과는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송재홍 등(2012)은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한국상담학회가 발급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의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검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연구결과 전문상담사의 책무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자교육 및 훈련, 연구, 지역사회 및 기업체 자문과 교육, 상담행정 등으로 나타났고 각 책무별 작업흐름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문상담사 자격증의 성격과 자격증 체계의 정비, 전문상담사 응시자격과 자격검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제도의 개선, 전문상담사 자격의 유지 및 갱신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중 등급별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 절차 개선방안에서 특징적인 점은 각 급별로 대학(원)에서 일정정도 학점을 이수한 후 교육연수기관에 실습생(예비수련생, 수련생, 고급수련생)으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수련을 마친 이후 자격시험을 보도록 한 점이다.

그리고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2015)는 산학학회인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sup>1)</sup>의 자격 소지자 12,689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1)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산하 학회인 한국가족치료학회는 자료미비로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음.

다. 조사내용은 회원의 기본실태, 단체가입 및 자격소지 현황, 취업현황 및 근무현황, 상담관련 진로만족도 및 역량 향상 등 4개 영역에서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자격 취득관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소요기간은 1년 이하가 30.8%로 가장 많았고, 1년 초과~2년 이하가 29.4%, 2년 초과~3년 이하가 18.0%로 나타났다. 급별 평균 소요기간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1급 상담심리사는 65.3개월, 2급 상담심리사는 27.0개월이고, 한국상담학회의 수련감독자는 67.2개월, 1급 전문상담사는 55.5개월, 2급 전문상담사는 29.2개월이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전문상담사 감독은 62.8개월, 전문상담사 수련감독은 65.4개월, 전문상담사 1급은 38.1개월, 전문상담사 2급은 28.5개월로 나타났다.

#### 민간자격의 문제점

위와 같은 민간자격의 현황과 연구물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 현재 2,000여종에 이르는 심리상담 민간자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각 자격을 발급하는 학회, 협회, 기관, 개인에 따라 상담의 개념정의가 다르고 따라서 상담에 포함된 활동과 그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가 다르다. 한편으로는 각 자격의 고유한 특성을 허용하여 다양한 상담접근이 발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상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담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부인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타로상담, 전생치료, food therapy, 역사치료 등 기존의 심리상담

분야에는 낮은 상담접근이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며 과연 상담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자격마다 수련감독자, 1급, 2급 등 자격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어느 자격에서는 학부졸업자가 1급을 취득할 수 있지만 다른 자격에서는 2급을 취득한다. 실제 상담과 슈퍼비전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이 있는 반면에 상담실무 과정 없이도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격의 명칭이나 급수만으로는 해당 자격이 어느 영역, 어느 수준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많은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게 된다.

둘째, 자격 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민간자격이 등록되었다고 해도 그 자격운영이 신고된 내용대로 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자격의 질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 민간자격등록신청편람에 명시된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p. 4)이라는 표현은 현재의 자격등록체제가 자격의 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진술이다. 형식적 등록과 비용납부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비교적 공신력 있는 민간학회의 경우에도 수련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부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즉 수련감독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수련생이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한 수련감독자에게서 자격부여가 거부될 경우 다른 수련감독자에게 가서 자격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자격을 소지했다고 해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수행 시 발생한 윤리적, 법적 문제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담실 내 성폭력이나 민간상담자격운영의 폐해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지만 상담계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즉 다양한 상담자격과 운영주체의 난립으로 인해 상담자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한 자격체제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자격을 활용하여 여전히 일상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셋째, 상담수련의 혼란과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상담교육과정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자격을 취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에 처하게 된다. 상담관련 공식 학교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느 학회 활동을 해야 하는가, 어느 자격은 유용 한가 등에 대해 신뢰로운 기준과 지침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자 자격증 쇼핑을 하기도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용한 자격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기도 한다. 상담관련 학과를 다니는 경우 대체로 지도교수와 관련된 학회활동과 자격증 수련을 하지만 여러 이유로 눈치를 보며 다른 학회 자격취득에 대해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인 학교교육의 비용 이외에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비용을 따로 감당해야 해서 상담지망생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곽미용, 이영순, 2010; 최해림, 김영혜, 2006).

## 상담 자격 발전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상담분야 국가자격과 민간 자격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상담법 제정, NCS 기반 자격제도, 상담교육 인증체제, 상담활동에 대한 행정규정을 시행, 상담활동 관리감독기구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담법 제정

자격제도의 유형을 자격이 발휘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업무 독점형 자격과 능력 인정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 독점형 자격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자격으로 일명 면허성 자격이라고 불린다. 능력 인정형 자격은 단순히 개인의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자격이다. 의사, 변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독점형 자격인 반면에 현재 상담분야 자격은 능력 인정형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분야 자격도 면허로서 운영되는 업무독점형 자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상담과 비전문상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전문상담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여 전문상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전문상담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김영근 등, 2012; 김정진, 2016). 상담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명칭사용의 독점권이 확보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과 활동에만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담’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변경할 수도 있다.

###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시행

2016년까지 상담심리, 청소년상담복지, 직업상담 등 상담분야의 NCS와 학습모듈이 개발되었으며(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2015), 향후 가족상담, 중독상담 등 여러 분야가 추가로 개발될 전망이다. 자격기본법 3조에는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담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각각 자신의 자격이 NCS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해야 한다(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한국산업인력공단(2015)은 심리상담 NCS 개발보고서에서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제도로 심리상담사 1급(NCS 7수준), 심리상담사 2급(NCS 5수준)을 제시하고, 자격 종류는 복합형으로 하여 NCS기반 교육과정 졸업자 중 상위 30% 해당자에게 자격부여하는 이수형과 NCS기반 검정을 통과한 자에게 자격부여하는 검정형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6년 청소년지도분야 신자격설계에서는 NCS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자격을 제안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 상담교육인증제도 시행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건축학, 공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증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각 전문직의 양성을 대학(원)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전담하면서 그 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교육인증제도는 학문의 전문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의 고등교육인증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관련 기관(인정기관)이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증관련 기관은 인증대상 학교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인증관련 독립적 회계를 운영하며, 인증기준, 절차, 방법을 구비하고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 6개 기관이 해당학문분야의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6개 학문분야의 평가인증기관들은 평가인증기관 연합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의회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남상인과 김인규(2009)는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국의 상담교육인증체제인 ‘상담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인증위원회’(CACREP: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와 미국심리학회 산하 ‘인증위원회’(CoA: 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를 소개하였다. 그 후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2013)은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김인규, 조남정(2016)은 학부상담교육인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최소기준 인증형 모델을 학부상담교육 인증의 모델로 제시

표 4. 상담교육인증 영역별 평가기준표(김인규, 조남정, 2016)

영역	부문	내용요약
I. 학과운영 (16)	1.1 비전 목표 (4)	1.1.1 상담 비전 목표 (4)
	1.2 운영체계 (12)	1.2.1 교육과정 공지 (4)
		1.2.2 교육과정 편성 (4)
		1.2.3 졸업 기준과 절차 (4)
II. 교육과정 (16)	2.1 학습 목표 (4)	2.1.1 학습 성과 (4)
	2.2 교과목 운영 (4)	2.2.1 교육과정 운영 (4)
		2.3 실습 운영 (8)
	2.3 실습 운영 (8)	2.3.2 실습 시간 (4)
		III. 학생 (20)
3.2 학생지도 (8)	3.2.1 학생지도 체계 (4)	
	3.2.2 학생지도 지원시스템 운영 (4)	
3.3 학생지원 (4)	3.3.1 학생활동 지원 (4)	
3.4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4)	3.4.1 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 (4)	
IV. 교수 (28)	4.1 교수확보 (16)	4.1.1 전임교원확보 (4)
		4.1.2 교수 채용 (4)
		4.1.3 교수 역량 (4)
		4.1.4 비전임교원 확보 (4)
	4.2 교수업적 (8)	4.2.1 전임교수 수업시수 (4)
		4.2.2 교수 수업 현황 (4)
	4.3 교수개발지원 (4)	4.3.1 교수개발지원 (4)
V. 교육환경 (16)	5.1 행정체계 (4)	5.1.1 대학의 행정지원체계 (4)
	5.2 재정지원 (4)	5.2.1 교육관련 재정지원 (4)
	5.3 교육시설 (4)	5.3.1 교육시설확보 (4)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4)	5.4.1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확보 (4)
VI. 교육성과 (8)	6.1 교육성과평가 (4)	6.1.1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4)
	6.2 졸업생 진로 (4)	6.2.1 졸업생 지원체제 구축 (4)

하였으며, 학과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 6개 영역을 인증영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 인증항목은 표 4와 같다. 또한 김인규, 최현아(2017)는 간호학, 경

영학, 건축학, 공학, 의학, 치의학 등 학과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6개 학문분야와 미국의 상담교육인증체제를 분석하고,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으로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 방법, 평가인증기관 정관 안, 상담교육인증 실시 절차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일정한 기준으로 상담관련학과의 교육을 인증하여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는 의학, 간호학 분야처럼 국가자격 부여에 있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상담활동에 대한 행정규정 시행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담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을 통과하여 인정받은 상담자격 보유자만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담관련 자격이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업무는 반드시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하지 않는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전반적인 상담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상담의 특정분야마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담자격의 종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의 양성 또는 채용에 있어 개인의 일정한 사항을 점검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범죄 경력조회나 범죄경력조회, 피성년후견인조회 등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담자 교육 또는 상담직 채용, 상담실 개설 등을 금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성범죄자에 대해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담활동 관리감독 기구 설치 운영

마지막으로 상담관련 제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 관련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독립부서가 있고, 의료보건 관련하여 보건 의료, 공공보건, 한의학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며,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부처가 각각 있다. 상담업무와 관련된 부처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안전처 등 다양하여 어느 부처가 주 부처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는 향후 논의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정부부처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상담관련 독립된 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 상담자격 발전을 위한 과제

이상에서 국내의 상담관련 자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상담분야 국가자격 중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 주요 국가자격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자격의 현황 및 관련 연구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담자격제도의 발전방안으로 상담법 제정,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시행, 상담교육인증제도 시행, 상담활동에 대한 행정규정 시행, 상담활동 관리감독 기구 설치 운

영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담분야의 특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자격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상담분야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상담자격 발전을 위해 상담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담분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일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국가자격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분야는 단일한 협회를 통해 해당분야의 힘을 결집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담분야는 다양한 자격, 학회, 학위 등에 따라 별도의 기구가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통일된 입장 정리와 의견 제시가 어려운 형편이다. 상담법 제정이나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담계의 의견을 정리해 오라’는 주문을 받을 정도로 상담분야 내부의 의견이 다양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상담자격 발전방안을 실행할 수 없다. 이에 여러 상담자격, 학회, 학위 등을 통합하여 관장할 수 있는 단일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사회복지 분야는 정책관련 과목 이수할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분야 정책전문가를 따로 양성하여 활용한다. 전통적으로 상담분야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담개입 기술 훈련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 상담정책 과목 이수나 상담정책전문가 양성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상담분야의 제도는 상담에 대한

비전문가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되어 왔고 상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상담자들이 개인 내면과 문제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정책민감성과 정책역량이 낮은 문제도 있다. 이에 상담교육에서 상담정책 교육을 필수화하고 상담실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상담정책 전문가를 양성하여 상담자격제도를 비롯한 상담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담을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다루는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상담관련 국가자격이 운영되고, 많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의 마음과 정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민간 영역에 맡겨지고 있다. 이는 의료, 법률, 복지, 간호, 부동산 등의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것과 대조된다. 상담분야의 법률과 제도가 체계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상담에서 다루는 심리, 관계, 성장 등의 영역이 공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적 관리 대상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을 다루는 자격기본법 17조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과 관리운영을 금하고 있다. 상담분야의 다양한 민간 자격이 난립하여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유는 상담분야가 아직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고통의 깊이와 영향력을 알고 있는 상담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다



루는 영역이 바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며 이는 거대한 사회적 손실비용과 국가적 역량 관리에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담자들과 상담분야 단체들은 상담이 다루는 분야가 국가의 공적 영역에 해당되며 따라서 국가적인 제도와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담론을 사회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상담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상담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여기에 상담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상담계가 한 목소리로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교육과정 운영 학과, 상담분야 학회, 상담실무자 단체, 상담기관 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추진을 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자격 및 상담분야 제반 사항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정부 및 국민에게 상담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며, 국민행복을 위한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김인규 (2011). 한국의 학교상담체제. 경기 과주시: 교육과학사.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김인규, 조남정 (2011). DACUM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계속교육과정 개발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41-60.  
 김인규, 조남정 (2016). 학부 상담교육 인증기준 개발. 상담학연구, 17(6), 87-104.  
 김인규, 최현아 (2017).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8(3), 43-57.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희정, 유형근, 정여주, 선혜연 (2015).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 세종: 교육부.  
 남상인, 김인규 (2009). 상담교육인증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II, 380-403.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송재홍, 김규식, 김봉환, 김현아, 이형국, 이은석 (2012).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상담학회.

- 이동귀, 김광식, 권혜수 (2013).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자격기준 재정립. 서울: 국방부.
- 정봉희 (2010).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 편성체제 개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상담심리 석,박사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청소년상담복지 NCS 및 활용패키지. <https://www.ncs.go.kr>에서 검색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 심리상담 NCS 및 활용패키지. <https://www.ncs.go.kr>에서 검색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NCS 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신자격개발 보고서. <https://www.ncs.go.kr>에서 검색
-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2015). 상담전문가 실태조사. 미출간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 <https://www.pqi.or.kr>에서 검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에서 검색.

원 고 접 수 일 : 2018. 0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08

계 재 결 정 일 : 2018. 07. 23

##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Counseling Certificates in South Korea**

**Kim In Gyu**

Jeonj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oth national and private counseling certificates in Korea and searched for a potential development plan. The problems of national certificates include lack of monopolistic licensure, lack of practical skills training and verification,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Issues with private certificates include absence of the standard of certificate, lack of certificate management system, and confusion of training. Enacting a counseling law, NCS-based counseling certificate system, counseling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management of counseling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counseling servic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suggested components for a development plan. As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certificates, establishing a single organization for the field of counseling, training of counseling policy education and counseling policy experts, and the formation of discourse about counseling as a public domain a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certificate, counseling law, NCS, counseling education accreditation*